

창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가단35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인 담당변호사 윤승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김동진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2,1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3,172,1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27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미반환금 2,902,100원(= 23,172,100원 - 20,2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처 C의 '계불입금 2,000,000원씩을 21주간 납입하는 게 2건에 가입하면 84,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 또는 C의 계좌에 계불입금으로 32,56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피고와 C은 원고를 계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2,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돈의 사기 혐의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2,902,100원을 지급받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계금 등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C은 원고에 대한 계금 등을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종전 채권과의 상계 등 방법으로 정산하여 왔음을 진술하였다. 피고는 그 명의 통장을 처인 C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 외에 계 가입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창원중부경찰서는 2022. 5. 11. 피고 등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을 내렸다.

② 원고와 C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3, 4호증)은 원고가 C으로부터 계좌 이체 외의 방식으로 계금을 정산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다.

③ 금전의 송금에는 다양한 법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원고와 C은 피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시로 여러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피고 계좌 간 이체액에 차액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위 송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거래라는 점이나 그 반환의무자가 C이 아닌 피고임을 각

추단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